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진 학 성]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11.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11. 29.

## 2. 예산안 규모

가. 총괄 (예산서안 p9)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기정예산액 (제3회추경) | 증 감 액     | 증감률 (%) |
|-------|----------------|---------------|-----------|---------|
| 계     | 783,541,017    | 775,912,953   | 7,628,064 | 0.98    |
| 일반회계  | 709,516,757    | 701,166,348   | 8,350,409 | 1.19    |
| 특별회계  | 74,024,260     | 74,746,605    | △722,345  | △0.97   |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6억 2,806만 4천원이 증액(0.98%)된 7,835억 4,101만 7천원으로 편성
- ▶ **일반회계 예산**은 7,095억 1,67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 5,040만 9천원이 증액(1.19%)됨
- ▶ **특별회계 예산**은 740억 2,42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234만 5천원이 감액(0.97%)됨

나. 세입예산(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예산서 p9)

(단위 : 천원)

| 구 분     | 제4회<br>추가경정<br>예산(안) | 기정예산액<br>(제3회추경) | 비교증감        |           |       |
|---------|----------------------|------------------|-------------|-----------|-------|
|         |                      |                  | 증감액         | 증감률(%)    |       |
| 합 계     | 783,541,017          | 775,912,953      | 7,628,064   | 0.98%     |       |
| 일반회계    | 소 계                  | 709,516,757      | 701,166,348 | 8,350,409 | 1.19  |
|         | 지방세수입                | 33,413,029       | 33,413,029  | 0         | 0     |
|         | 세외수입                 | 16,007,788       | 12,037,741  | 3,970,047 | 32.98 |
|         | 지방교부세                | 277,538,204      | 277,517,204 | 21,000    | 0.01  |
|         | 조정교부금등               | 29,944,072       | 25,673,831  | 4,270,241 | 16.63 |
|         | 보조금                  | 230,981,844      | 231,976,658 | △994,814  | △0.43 |
|         | 보존수입등내부거래            | 121,631,820      | 120,547,885 | 1,083,935 | 0.90  |
| 공기업특별회계 | 45,537,317           | 45,913,517       | △376,200    | △0.82     |       |
| 기타특별회계  | 28,486,943           | 28,833,088       | △346,145    | △1.20     |       |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6억 2,806만 4천원이 증액(0.98%)된 7,835억 4,10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95억 1,67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 5,040만 9천원이 증액(1.19%) 되었고,
-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5억 3,73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620만원이 감액(0.82%) 되었으며,
-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4억 8,69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614만 5천원이 감액(1.20%) 되었음.

다. 세출예산(일반+특별) (예산서 p27)

(단위 : 천원)

| 구 분      | 제4회<br>추가경정<br>예산(안) | 기정예산액<br>(제3회추경) | 비교증감        |           |       |
|----------|----------------------|------------------|-------------|-----------|-------|
|          |                      |                  | 증감액         | 증감률(%)    |       |
| 합 계      | 783,541,017          | 775,912,953      | 7,628,064   | 0.98      |       |
| 일반<br>회계 | 소 계                  | 709,516,757      | 701,166,348 | 8,350,409 | 1.19  |
|          | 의회운영위원회              | 935,421          | 1,023,486   | △88,065   | △8.60 |
|          | 총무위원회                | 363,611,640      | 355,600,890 | 8,010,750 | 2.25  |
|          | 산업건설위원회              | 344,969,696      | 344,541,972 | 427,724   | 0.12  |
| 공기업특별회계  | 45,537,317           | 45,913,517       | △376,200    | △0.82     |       |
| 기타특별회계   | 28,486,943           | 28,833,088       | △346,145    | △1.20     |       |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6억 2,806만 4천원이 증액(0.98%)된 7,835억 4,10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소관별로 살펴보면

- ▶ 일반회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9억 3,54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06만 5천원이 감액(8.60%) 되었고,
- ▶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636억 1,16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 1,075만원이 증액(2.25%)되었으며,
- ▶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449억 6,96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772만 4천원이 증액(0.12%)되었음.
-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5억 3,73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620만원이 감액(0.82%) 되었으며,
-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4억 8,69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614만 5천원이 감액(1.20%) 되었음.

### 3. 예비심사 결과

#### 가. 의회운영위원회

- 세입·세출예산안 : 해당 없음
- 세입·세출예산안 변동 조서 : 해당 없음

#### 나. 총무위원회

-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입예산안 변동 조서
  - 일반회계 : 해당없음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세출예산안 변동 조서
  - 일반회계 : 해당없음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다. 산업건설위원회

-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입예산안 변동 조서
  - 일반회계 : 해당없음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세출예산안 변동 조서
  - 일반회계 : 해당없음
  - 특별회계 : 해당없음

**4. 주문사항** : 해당없음

# [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1.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1. 29.

### 2. 2021년도 기금 변경(안)

####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나. 주요내용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 구 분     | '20년도말<br>조성액① |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            |             | '21년도말 조성액<br>③=②+ ① |
|---------|----------------|----------------|------------|-------------|----------------------|
|         |                | 수 입<br>②       | 지 출<br>④   | 증감<br>⑤=④-③ |                      |
| 계       | 152,278,879    | 43,583,598     | 60,000,000 | △16,416,402 | 135,862,477          |
| 재정안정화계정 | 152,278,879    | 31,220,480     | 60,000,000 | △28,779,520 | 123,499,359          |
| 통합계정    | 0              | 12,363,118     | 0          | 12,363,118  | 12,363,118           |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 '21년도말 조성액 ㉑ | 용자금 미회수채권 ㉒ |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㉓ | 총 조성규모 ㉔=㉑+ ㉒-㉓ |
|---------|--------------|-------------|-----------------|-----------------|
| 계       | 135,862,477  | -           | -               | 135,862,477     |
| 재정안정화계정 | 123,499,359  | -           | -               | 123,499,359     |
| 통합계정    | 12,363,118   | -           | -               | 12,363,118      |

○ 사회복지기금 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 구 분    | '20년도말 조성액㉑ |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           |            | '21년도말 조성액 ㉔=㉑+ ㉓ |
|--------|-------------|----------------|-----------|------------|-------------------|
|        |             | 수 입 ㉒          | 지 출 ㉓     | 증감 ㉔=㉒-㉓   |                   |
| 계      | 3,475,878   | 116,744        | 1,177,664 | △1,060,920 | 2,414,958         |
| 노인복지계정 | 1,060,978   | 14,134         | 10,800    | 3,334      | 1,064,312         |
| 양성평등계정 | 1,073,712   | 17,202         | 1,090,914 | △1,073,712 | 0                 |
| 자활계정   | 1,341,188   | 85,408         | 75,950    | 9,458      | 1,350,646         |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 '21년도말 조성액 ㉑ | 용자금 미회수채권 ㉒ |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㉓ | 총 조성규모 ㉔=㉑+ ㉒-㉓ |
|--------|--------------|-------------|-----------------|-----------------|
| 계      | 2,414,958    | -           | -               | 2,414,958       |
| 노인복지계정 | 1,064,312    | -           | -               | 1,064,312       |
| 양성평등계정 | 0            | -           | -               | 0               |
| 자활계정   | 1,350,646    | -           | -               | 1,350,646       |



### 3.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 기금명           | 2020년말<br>조성액<br>① | 2021년도<br>기금운용 계획 |            | 2021년도말<br>조성액<br>④=①+②-③ | 증감<br>⑤=④-① |
|---------------|--------------------|-------------------|------------|---------------------------|-------------|
|               |                    | 수입<br>②           | 지출<br>③    |                           |             |
| 합계            | 155,754,757        | 43,700,342        | 61,177,664 | 138,277,435               | △17,477,322 |
| 통합재정<br>안정화기금 | 152,278,879        | 43,583,598        | 60,000,000 | 135,862,477               | △16,416,402 |
| 사회복지기금        | 3,475,878          | 116,744           | 1,177,664  | 2,414,958                 | △1,060,920  |

### 4. 검토의견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담당관>[p2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등 지방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고
- 변경안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여유재원 전입금 200억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고, '20년 기금결산 결과 예치금회수 증감액 △281,121천원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 사회복지기금<행복나눔과>[p31]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노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 자활계정으로 구성되어 운용되어 왔으나
- 기금 중 양성평등계정이 2021. 12. 31. 폐지(예정)되어 일반회계로 전환(예정)됨에 따라 양성평등계정 △1,073,712천원을 반영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회복지실현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사업 확대 등을 통한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한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예비 심사결과

- 총무위원회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